

## 결격사유

### □ 공단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-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⑦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⑧ 병역법에 의한 병역(징병검사, 징집·소집, 입영, 군복무 등)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
- ⑨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⑩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⑪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붙임 2

# 입사지원 시 필요한 분야별 자격증

### □ 일반

| 구분<br>분야 |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 |  |   |
|----------|--|--|---|
| 토목       | 『기술사』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철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질 및 지반, 소음진동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 | 『기사』 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응용지질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  | 『산업기사』 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폐기물처리   |
| 건축       | 『기술사』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축전기설비, 조경, (건축사)  | 『기사』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조경<br>『기능장』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  | 『산업기사』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(조적), 건축, 조경, 건축목공, 실내건축   |
| 전기       | 『기술사』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전자응용   | 『기사』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승강기, 전자<br>『기능장』 전기, 전자기기   | 『산업기사』 전기(전기, 전자기기)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승강기, 전기철도, 전자  |
| 통신       | 『기술사』 정보통신, 전자응용   | 『기사』 정보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(전파통신, 전파전자), 전자<br>『기능장』 통신설비  | 『산업기사』 정보통신, 통신선로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(전파통신, 전파전자), 전자   |
| 기계       | 『기술사』 기계제작,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건설기계, 기계공정설계, 용접, 금형, 기계안전, 공장관리, 건축기계설비, 산업기계설비, 산업계측제어, 소방         | 『기사』 일반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건설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에너지관리, 건축설비, 기계설계, 궤도장비정비, 소방설비, 자동차정비<br>『기능장』 건설기계정비, 금형제작, 기계가공, 용접, 철도차량정비, 에너지관리, 자동차정비, 판금제관 | 『산업기사』 기계가공조립(기계조립), 기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철도차량(철도동력차기관정비, 철도동력차전기정비, 객화차정비)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(건설기계), 건설기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(판금, 제관), 건축설비, 컴퓨터응용가공, 철도운송, 궤도장비정비, 에너지관리(보일러), 소방설비 |

\* ( ) :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

## □ 시간선택제

| 구분<br>분야 |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토목       | 『기술사』 토질 및 기초, 토목 품질시험, 토목구조, 철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, 지질 및 지반, 소음진동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자연환경 관리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 | 『기사』 건설재료시험, 철도 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응용지질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토양 환경, 폐기물처리 | 『산업기사』 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폐기물처리 | 『기능사』 측량, 건설재료 시험, 철도토목 (보선), 콘크리트 |
| 전기       | 『기술사』 발송배전, 건축전기 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전자응용   | 『기사』 전기, 전기공사, 철도 신호, 전기철도, 송강기, 전자 기능장』 전기, 전자기기   | 『산업기사』 전기(전기, 전기 기기)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송강기, 전기철도, 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『기능사』 전기, 송강기, 철도전기신호, 전기기기, 전자기기  |

## 전형별 가점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우대사항            | 적용전형 |    |    | 부여가점<br>(만점기준)  |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|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서류   | 필기 | 면접 |   |    |   |
| 특 별<br>가 점             | 취업지원<br>대상자(법정) | ○    | ○  | ○  | 5% 또는 10%   |    | 관련법률에 의한<br>해당자격 증빙서류<br>제출자에 한함<br>(경력단절여성에 대한<br>가점은 시간선택제<br>채용에 한함)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| ○    | ○  | ○  | 5%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기초<br>생활수급자   | ○    | -  | -  | 5%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력단절여성          | ○    | -  | -  | 5%  |    |   |
| 일 반<br>가 점             | 한국사<br>능력검정     | ○    | -  | -  | 5%  |    | 3급 이상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인어학성적          | ○    | -  | -  | 최대 2%   |    | TOEIC, TEPS, TOEFL,<br>HSK, JPT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<br>근무경력    | ○    | -  | -  | 2%  |    | 실근무경력 만3년<br>이상에 한함   |
| 자격증<br>가 점<br>[붙임4 참조] | 전문자격증<br>보유자    | -    | ○  | -  | 변호사,<br>공인회계사,<br>세무사,<br>감정평가사,<br>공인노무사,<br>기술사,<br>건축사 | 5% | 공단이 인정하는<br>국가기술자격법 및<br>기타법령에 의한<br>자격증을 소지하고<br>해당분야에 응시한<br>자에 한함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자격증<br>보유자    | -    | ○  | -  | 기사, 기능장   | 3%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| 산업기사  | 2% |   |
| 청년인턴<br>가 점            | 우리공단<br>인턴      | ○    | ○  | -  | 서류전형 5%,<br>필기전형 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공고일 기준 2년 이내<br>경력에 한함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기관<br>인턴      | ○    | -  | -  | 2%  |    |   |

- 1) 모든 가점은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
- 2) 특별가점 내의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합산하여 특별가점으로 인정
- 3)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 내의 각 우대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, 가장 유리한 1개만 해당가점으로 인정
- 4) 특별가점, 일반가점, 자격증가점, 청년인턴가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여 인정
- 5) 공공기관 인턴 가점은 "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"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며, 당해 공공기관의 채용공고에 따른 합격자의 인턴경력 1개월 이상만 인정

○ 가점적용 모집분야 및 적용기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대사항            | 가점적용<br>모집분야   | 가점 적용기준<br>(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)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특<br>별<br>가<br>점                 | 취업지원<br>대상자(법정)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기초<br>생활수급자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력단절여성          | 시간선택제          | - 이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일<br>반<br>가<br>점                 | 한국사<br>능력검정 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인어학성적      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※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<br>- 공단 토익기준 환산점수 적용<br>- 영어 (TOEIC, TEPS, TOEFL)<br>- 일본어 (JPT) / 중국어 (HSK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평가기준 (해당가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• 990 만점 (新 HSK 6급 300)</td> <td><b>(2.0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950 ~ 985 (新 HSK 6급 209 ~ 299)</td> <td><b>(1.7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900 ~ 945 (新 HSK 6급 180 ~ 208)</td> <td><b>(1.4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850 ~ 895 (新 HSK 5급 255 ~ 300)</td> <td><b>(1.1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800 ~ 845 (新 HSK 5급 210 ~ 254)</td> <td><b>(0.8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750 ~ 795 (新 HSK 5급 195 ~ 209)</td> <td><b>(0.5)</b></td> </tr> <tr> <td>• 700 ~ 745 (新 HSK 5급 180 ~ 194)</td> <td><b>(0.2)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평가기준 (해당가점) |  | • 990 만점 (新 HSK 6급 300) | <b>(2.0)</b> | • 950 ~ 985 (新 HSK 6급 209 ~ 299) | <b>(1.7)</b> | • 900 ~ 945 (新 HSK 6급 180 ~ 208) | <b>(1.4)</b> | • 850 ~ 895 (新 HSK 5급 255 ~ 300) | <b>(1.1)</b> | • 800 ~ 845 (新 HSK 5급 210 ~ 254) | <b>(0.8)</b> | • 750 ~ 795 (新 HSK 5급 195 ~ 209) | <b>(0.5)</b> | • 700 ~ 745 (新 HSK 5급 180 ~ 194) | <b>(0.2)</b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기준 (해당가점)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990 만점 (新 HSK 6급 300)          | <b>(2.0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950 ~ 985 (新 HSK 6급 209 ~ 299) | <b>(1.7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900 ~ 945 (新 HSK 6급 180 ~ 208) | <b>(1.4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850 ~ 895 (新 HSK 5급 255 ~ 300) | <b>(1.1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800 ~ 845 (新 HSK 5급 210 ~ 254) | <b>(0.8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750 ~ 795 (新 HSK 5급 195 ~ 209) | <b>(0.5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• 700 ~ 745 (新 HSK 5급 180 ~ 194) | <b>(0.2)</b>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<br>근무경력                 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 | - 실근무경력 만3년 이상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자격증<br>가 점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자격증<br>보유자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[붙임4] 가점인정 자격증에 한함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자격증<br>보유자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청년인턴<br>가 점                      | 우리공단<br>인턴      | 일 반<br>시간선택제   | - 공공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)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<br>*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경력에 한함<br>☞ 해당기관의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함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기관<br>인턴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가점인정 자격증

| 구분<br>분야 | 법령에 의한 국가공인 자격증 등  |  |   |
|----------|--|--|---|
| 공통       | <b>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</b><br><b>[기술사]</b> 건설안전, 품질관리, 공장관리, 교통, 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(전자계산기조직응용), 지적<br><b>[기사]</b> 건설안전, 산업안전, 품질경영(품질관리, 공정관리), 교통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지적<br><b>[산업기사]</b> 건설안전, 산업안전, 품질경영,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, 지적 |  |   |
| 토목       | <b>『기술사』</b>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철도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지질 및 지반, 소음진동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자연환경관리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  | <b>『기사』</b> 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응용지질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토양환경, 폐기물처리   | <b>『산업기사』</b> 건설재료시험, 철도토목(철도보선)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콘크리트, 소음진동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자연생태복원, 폐기물처리  |
| 건축       | <b>『기술사』</b>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축전기설비, 조경, (건축사)   | <b>『기사』</b>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조경<br><b>기능장</b>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  | <b>『산업기사』</b>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(조적), 건축, 조경, 건축목공, 실내건축  |
| 전기       | <b>『기술사』</b> 발송배전, 건축전기설비, 전기응용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전기안전, 전자응용  | <b>『기사』</b> 전기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전기철도, 승강기, 전자<br><b>기능장</b> 전기, 전자기기   | <b>『산업기사』</b> 전기(전기, 전자기기), 전기공사, 철도신호, 승강기, 전기철도, 전자   |
| 통신       | <b>『기술사』</b> 정보통신, 전자응용  | <b>『기사』</b> 정보통신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(전파통신, 전파전자), 전자<br><b>기능장</b> 통신설비  | <b>『산업기사』</b> 정보통신, 통신선로, 무선설비, 전파전자통신(전파통신, 전파전자), 전자  |
| 기계       | <b>『기술사』</b> 기계제작, 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건설기계, 기계공정설계, 용접, 금형, 기계안전, 공장관리, 건축기계설비, 산업기계설비, 산업계측제어, 소방  | <b>『기사』</b> 일반기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건설기계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에너지관리, 건축설비, 기계설계, 궤도장비정비, 소방설비, 자동차정비<br><br><b>『기능장』</b> 건설기계정비, 금형제작, 기계가공, 용접, 철도차량정비, 에너지관리, 자동차정비, 판금제관 | <b>『산업기사』</b> 기계가공조립(기계조립), 기계설계, 공조냉동기계, 철도차량, 철도차량(철도동력차기관정비, 철도동력차전기정비, 객화차정비), 자동차정비, 건설기계설비(건설기계), 건설기계정비, 정밀측정, 용접, 프레스금형, 사출 금형, 기계정비, 판금제관(판금, 제관), 건축설비, 컴퓨터응용가공, 철도운송, 궤도장비정비, 에너지관리(보일러), 소방설비 |

\* ( ) :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

- 1) 사무직 : 공통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1개만 가점인정
- 2) 기술직 : 공통, 해당직렬 분야 자격증 중 가장 유리한 1개만 가점인정

## 이전지역 인재

### □ 이전지역인재의 개념

-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 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**우리 공단 응시자는 대전시·충청남도·충청북도·세종시에 소재(이하 “이전지역”이라 함)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**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### □ 이전지역 학교

- ①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 등의 분교
  - \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 - \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\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**다음 학교는**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**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**
  - ㉠ 『경찰대학 설치법』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 - ㉡ 『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 - ㉢ 『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 - ㉣ 『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』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⑤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- 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## □ 이전지역인재

이전지역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###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- ㉠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- 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### ② 이전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###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인재에서 제외



## □ 이전지역인재 해당여부 예시 (참고)

### <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>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,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,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- \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### <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### <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### <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>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### <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>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### <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>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### <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>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